

조선시대의 혼례복 규범

이 은 주 · 최 은 수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1. 서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혼례복 규범과 변천 양상에 관한 것으로, 신랑의 紗帽 · 冠帶, 신부의 족두리 · 화관에 圓衫 또는 활옷이라고 하는 혼례복 규범이 언제부터 형성된 것인지, 보편적인 규범이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혼례복 전통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할 때 올바른 전통 혼례복의 계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내용의 시기는 「朱子家禮」가 수용되면서 정착된 조선시대로 한정하되, 혼례복 관련 선행연구와 고문헌, 그리고 출토유물이나 전래유물을 활용하여 班家의 혼례복 규범과 시대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아울러 의례 절차에 따른 복식의 변화와 여성 신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의 혼례복 규범

1) 규범으로의 혼례복

미국의 사회학자 W. G. Sumner(1840–1910)에 의해 사회 규범이 체계적으로 분류된 바 있다. 사회 규범에는 民習(folkways)과 原規(mores), 그리고 법률(laws) 등이 있다. 특히 민습은 가장 흔히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준수하는 규범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합당하고 올바르다고 간주하는 행위의 지침을 이른다. 의복관행이나 예절, 의식 등 일상적인 행동유형을 좌우하는 규범으로, 수정되면서 면면이 이어진다.

이를 어겼을 때 타인으로부터 받는 비난은 다른 규범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편이지만 같은 의례복이라고 해도 의례의 성격에 따라 허용되는 융통성에는 차이가 있다. 상례복에 대한 규범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혼례복 규범은 덜 엄격한 편이다. 그래서 더욱 다양한 혼례복이 가능한 것이다.

2) 혼례 절차와 혼례복

예서에 나타난 혼례의 기본적인 틀은 중국 혼례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수용된 이후 변형된 혼례규범이 정착되었다. 중국의 전통혼례는 六禮로 이루어졌는데 그 단계가 納采, 納幣, 問名, 納吉, 納徵, 親迎로 정리된다. 그러나 후대에 발간된 「朱子家禮」에서는 좀 더 간략하게 하여 議婚, 납채, 납폐, 친영의 혼례 四禮로 되어 있고 이 육례와 사례가 섞여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예서인 「四禮便覽」에서는 의혼, 납채, 납폐, 그리고 친영의 4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혼례의 관행 정도는 계층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혼례에서는 본인의 신분보다 높은 자의 옷을 허용하는데 이러한 관행을 ‘攝盛’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랑과 신부는 생애의 가장 호사스러운 차림을 할 수 있게 된다. 신랑은 신랑 예복을 입고 신부의 집에 가는 것을 酬行이라고 하며 도착 후 奘雁禮를 치룬다. 신부는 머리장식과 혼례복으로 盛裝하고 초례청에서 신랑과 서로 절을 주고 받는 交拜禮, 술을 마시는 合禮라고 하는 大禮를 치룬다. 대례 후 新房을 차린다. 이 때 신랑은 혼례복을 벗고 신부 집에서 정성들여 만들어 둔 평상복을 입는다. 이 절차를 세속에서는 ‘관대벗김’이라고 한다.

초야를 치룬 후 적절한 시기에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절차를 于歸 또는 新行이라고 하며 시댁에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見舅姑禮’를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부는 다시 盛裝을 하게 된다.

3) 조선시대 혼례복 규범

상례(喪禮)에서 사용된 복식이 전기와는 변화된 양상을 제시하고 있는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분기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혼례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의 문헌인 「가례언해(家禮諺解)」의 찬술 시기 정도를 분기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소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17세기 전기를 조선 후기의 시작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 조선 전기의 혼례복 규범

연대	절차	전안례(奠雁禮)	교배(交拜) · 합근례	출처
1446년(세종28년)	-		婚家 大紅入染 심함	세종실록
1551년(명종6년)	-		金線之衣 · 珠璣之裳	명종실록
1561년(명종16년)	黑團領(신부족 집사)		新婦長衫 · 大帶 · 褂 · 首飾	목재일기
1576년(선조9년)	黑團領, 紗帽冠帶		上衣	미암일기
1594년(선조27년)	黑團領, 金帶, 雨傘黑團領(신부 아버지)		赤古里 · 婦首 · 婦衣 · 婦裝	쇄미록
1600년(선조33년)	-		草綠上赤古里 · 藍段下裳(紅裳 대신 사홍) · 紫色絛段遮首	쇄미록
1603년(선조36년)	-		〈궁중용〉 露衣(花紋紅段) · 長衫(花紋紅段)	선조실록

(2) 조선 후기의 혼례복 규범

절 차	인물	복 식	출처
초 행	신랑	사모 · 자색단령 · 서대 · 흑화 · 青扇	金申夫婦傳 · 東廂記 · 居家雜服攷
전안례	신랑	사모 · 자색단령 · 서대 · 흑화	
교배례	신랑	사모 · 자색단령 · 서대 · 흑화	
합근례	신부	거두미(어여미, 화관, 족두리) · 홍장삼(홍원삼, 원삼) · 홍상 · 스란치마	瓶窯集 · 金申夫婦傳 · 東廂記 · 居家雜服攷 · 與猶堂全書 등
신 방	신랑	연거복	
	신부	거두미(어여미, 칠보족두리) · 홍장삼 · 홍상 · 스란치마	
우 귀	신랑	사모 · 자색단령 · 서대 · 흑화 · 青扇	풍속화
	신부	-	京都雜誌 · 풍속화 등
현구고례	신랑	사모 · 자색단령 · 서대 · 흑화	農圃問答 · 閨閣叢書 · 與猶堂全書
	신부	어여미(위계, 화관) · 당의(홍장삼, 원삼) · 홍치마	

3. 결론

혼례복은 일종의 의례 규범으로,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는데 특별히 섭성 원칙이 적용되어 신분을 초월하는 화려한 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신랑은 사모에 흑단령, 품대를 사용하는 것이 규범이었으며 신부는 長衫을 착용하는 것이었으나 관행적으로는 상황에 맞는 복식이 사용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의 예서에서는 전기보다 구체적인 혼례복 규범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랑은 문무백관의 흑단령보다는 大君이나 儀賓의 자색 단령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신부는 혼례 절차별로 복식을 달리 착용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초례청에서는 주로 홍장삼을, 현구고례에서는 성인 여성의 예복인 원삼이 착용되었다. 이러한 혼례 절차에 따른 신부복의 변화는 여성의 신분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홍장삼은 18세기 이후에 자수 등의 화려한 문양이 추가되면서 활옷이라는 옷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4. 참고문헌

Sumner, W. G.(1906), Folkways, Boston: Ginn.

朴珪壽(趙孝順 역), 居家雜服攷, 서울: 石室, 2000.

憑虛閣李氏,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1992.

李能和, 朝鮮女俗考, 韓國學研究所, 1927.

鄭尙驥(李翼成 역), 農圃問答, 서울: 乙酉文化社, 1974.

丁若鏞, 與猶堂全書 외 다수